

통계청 '2006 가계수지 동향' 살펴보니

세금·공적 부담 늘고 소득분배는 '제자리'

가구 월평균 소득 300만원 돌파

통계청이 6일 발표한 '2006년 4·4분기 및 연간 가계수지 동향'은 전반적인 소득과 소비가 뚜렷하게 살아나지 못하는 가운데 소득 분배는 제자리 걸음을 거듭하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또 교역조건 악화로 실질 소득 증가율은 지난 2004년 6.0%에서 2005년 4.1%로 떨어졌다가 2006년 5.1%로 다시 확대했다. 전국가구의 지난해 4·4분기 월평균 소득은 2005년 4·4분기에 비해 7.7% 늘어난 316만8천원으로 집계됐다.

◇세금·공적지출 증가율 '껑충'= 지난해 전국가구의 연간 소비지출이 212만 원으로 전년보다 4.2% 늘어난 가운데 월세와 주택수리비 등 주거비 지출이 2005년 7.5%에서 지난해 3.4%로 낮아진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교육비와 조세를 비롯한 공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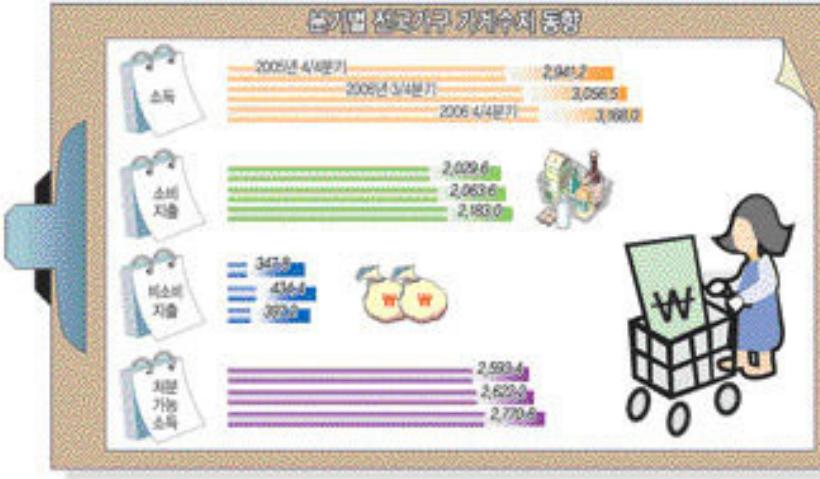
부담이 늘어나면서 가계를 압박하는 주

했다. 또 지난해 2인 이상 도시근로자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2005년에 비해 5.9% 증가한 344만3천원으로 나타났다.

◇세금·공적지출 증가율 '껑충'= 지난해 전국가구의 연간 소비지출이 212만 원으로 전년보다 4.2% 늘어난 가운데 월세와 주택수리비 등 주거비 지출이 2005년 7.5%에서 지난해 3.4%로 낮아진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교육비와 조세를 비롯한 공적

부담이 늘어나면서 가계를 압박하는 주



된 요인으로 작용했다. 교육비 증가율은 5.2%로 2005년(4.5%)보다 더욱 높아졌으며, 가구당 월평균 24만1천700원을 지출한 것으로 추계됐다.

특히 2005년 가구당 7만4천100원이었던 조세부담이 8만7천100원으로 14.1%나 수직 상승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주택 공시가 기준 9억원 초과에서 6억원 초과로 낮아져 부과 기준도 인별로 가구별 합산으로 바뀌면서 재산세 증가폭이 커진 점이 조세증가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소득분배는 '악화일로'= 2006년 전국가구의 가계수지 동향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참여정부의 분배개선에 대한 강

조에도 불구하고 분배사정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는 점이다.

전국가구의 소득기준 지니계수는 지난해 0.351로, 조사를 시작한 해인 2003년 0.341을 시작으로 매년 상승하고 있다. 지니계수는 낮을수록 소득의 평등도가 높음을 뜻하며 통상 0.4를 넘으면 불평등도가 심한 것으로 평가된다.

상위 20% 가구의 평균소득이 하위 20% 가구의 몇배인지를 보여주는 소득 5분위 배율 역시 7.64배로, 2005년(7.56 배)보다 또다시 높아지면서 지난 2003년 이후 상승 추세를 이어갔다. 지난 4년 간 소득분배의 악화가 더욱 심화된 것이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휴면예금 3,666억

빨리 찾아가세요

금감위, 공익기금 활용 법안 제출

예금자가 찾아가지 않은 휴면예금이 3천600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작년 11월 말 현재 정기권 소멸 시효 5년이 지난 은행권의 휴면예금은 3천525만계좌에 3천666억원으로 집계됐다고 6일 밝혔다.

휴면예금의 계좌당 평균 금액은 1만401원으로, 10만원 이하의 휴면예금이 전체의 47.6%(3천477만계좌에 1천742억원)를 차지했다.

1천만원을 초과하는 휴면예금은 740계좌에 140억 원이었다.

2003년부터 3년간 연평균 1천177억원의 휴면예금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연합회는 휴면예금 환급을 위해 작년 4월 말부터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와 공동으로 '휴면계좌 통합 조희 시스템'을 공동으로 개발해 작년 11월까지 102억 원의 휴면예금을 돌려줬다.

은행들은 작년 12월 1일부터 휴면예금 보유자가 동일 은행에 활동 계좌를 갖고 있을 경우 30만원 범위에서 휴면예금을 활동 계좌로 이체시켜주고 있다.

금감위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휴면예금 활용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면 휴면예금을 공익 목적인 사업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年 진료비 300만원 이상 고액환자

전남 1만명당 314명

전국 105만명 달해

연간 진료비가 300만원 이상인 환자가 사상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전남의 300만원 이상 고액환자 1만명당 314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05년 건강보험 진료비를 분석한 결과 연간 진료비가 300만원 이상인 고액 환자가 105만4천935명에 달했다.

이들 환자의 건강보험 적용 진료비는 총 7조2천570억원이며 이 중 77%에 해당하는 5조5천855억원을 건강보험 재정에서 부담했다. 이 같은 액수는 2005년 한해 지급된 건강보험 급여비 17조9천886억원의 31.1%를 차지한다.

건강보험 혜택을 가장 많이 본 환자는 혈우병을 앓고 있는 김모(34·울산)씨로 지급액이 10억142만원이나 됐다. 건강보험 최고액 수령자 상위 10명 중 1~5위까지는 모두 혈우병, 나머지 5명은 허리난마성 질환인 고려병 환자로 6억4천760만원부터 3억7천565만원까지 지급됐다.

연간 진료비가 1억원 이상 환자는 210명으로 남성이 178명으로 두 배를 넘겼다. 300만원 이상 고액환자는 지역별로 노인인구 비율이 높은 전남이 1만명당 314명으로 가장 많았고, 전북 302명, 충남 278명 등 많은 반면 인천 186명, 울산 187명, 경기 189명 등으로 적은 편에 속했다. /연합뉴스

에너지사업에 수익 담보 대출

신재생 에너지 발전사업자들이 발전소 건설 이후 발생할 수익을 담보로 융자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산업자원부는 6일 신용대출제 도입을 과정으로 윤리 신재생 에너지 보급사업자 사업장을 확정하고 에너지관리공단을 통해 자금지원 지침을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자부는 신용대출제의 도입으로 전력생산과 동시에 발생할 수익이 융자사업자에게 확정되며 이를 통해 중소형 신재생 에너지 사업자들의 자금증여로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고 있다. 태양광과 풍력, 소수력, 바이오, 폐기물, 지열 등을 이용하는 신재생 에너지 사업 보급용역에 투입될 예산은 올해 모두 1천214억원이며 융자조건은 연리 3~4%대의 낮은 이자율로 8~15년간 장기 분할 상환하는 형태다.

산자부는 수혜복을 넓히기 위해 산자부당 융자한도를 지난해 150억원에서 70억원으로 낮추는 한편, 비용회수 기간이 짧은 바이오 및 폐기물 분야에 대해서는 대출기간을 종전 5년에서 10년 분할상환을,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강신호 회장, 전경련 회장 연임 포기

강신호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은 지난달 열린 전경련 회장단 회의에서 차기 회장으로 재추대됐음에도 불구하고 연임을 포기하기로 했다고 조건호 전경련 상근부회장이 6일 밝혔다.

강 회장은 지난달 열린 전경련 회장단 회의에서 차기 회장으로 재추대됐으나 그 이후 불거진 아들과의 경영권 분쟁, 전경련 운영에 불만을 품은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의 전경련 부회장직 사퇴 등으로 연임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었다.

강 회장의 사퇴로 전경련은 차기 회장 선임을 위한 절차를 새로 시작해야 하지만 4대그룹은 물론 협 회장단 가운데 아무도 선뜻 이 자리를 맡겠다고 나서지 않는 상황에서 전경련에 예상된다.

조 부회장인 이달 전경련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강 회장은 지난달 25일 회장단 회의에서 차기 회장으로 추대된 바 있으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차기 회장직을 수락하지 않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2007년형 '보르도' LCD TV

삼성전자가 6일 발표한 '보르도' LCD TV 2007년형. 베젤 디자인으로 고급스러운 크리스탈 와인 잔의 모습을 형상화했으며 178도의 광시야각을 적용해 어느 방향에서도 TV를 선명하게 즐길 수 있게 했으며, 명암비도 기존의 5천대 1에서 1만대 1로 100% 향상시킨 것이 특징이다.

/연합뉴스

출총제 출자한도 25%→40%로

지방이전 공공기관 부지 토공서 매입

출자총액제한제도(출총제)의 적용을 받는 기업들의 출자한도가 순자산의 25%에서 40%로 상향 조정된다.

또 지방 이전 공공기관의 부지를 한국토지공사, 또는 대한주택공사 매입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6일 오전 중앙청에서 한명숙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출총제 적용대상 기업의 출자한도를 순자산의 25%에서 40%로 상향조정하고 지자체의 부채비율은 자본총액대비 100%에서 200%로 완화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제정안은 또 지방 이전 공공기관의 부지를 한국토지공사, 또는 대한주택공사 매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을 의결했다.

시행령안은 이전 공공기관의 범위를 '수도권에서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정하고 혁신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는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연합뉴스

개정안은 또 지주회사의 자회사 및 순자산부지분을 요건을 상장의 경우 30%에서 20%로 낮췄고 비상장의 경우에는 50%에서 40%로 완화했다.

출총제 적용 기업집단에 속한 회사가 한도액을 초과해 외국인투자기업의 주식을 취득·소유하는 경우에는 기한의 제한 없이 예외를 인정받게 된다.

공정위는 조만간 출총제 적용대상을 자산규모 6조원 이상 기업집단의 모든 소속 회사에서 10조원 이상 집단의 2조원 이상인 중핵기업으로 축소하는 내용으로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개정안은 또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부지를 한국토지공사, 또는 대한주택공사 매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을 의결했다.

시행령안은 이전 공공기관의 범위를 '수도권에서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정하고 혁신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는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연합뉴스

제정안은 또 지주회사의 자회사 및 순자산부지분을 요건을 상장의 경우 30%에서 20%로 낮췄고 비상장의 경우에는 50%에서 40%로 완화했다.

출총제 적용 기업집단에 속한 회사가 한도액을 초과해 외국인투자기업의 주식을 취득·소유하는 경우에는 기한의 제한 없이 예외를 인정받게 된다.

공정위는 조만간 출총제 적용대상을 자산규모 6조원 이상 기업집단의 모든 소속 회사에서 10조원 이상 집단의 2조원 이상인 중핵기업으로 축소하는 내용으로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제정안은 또 지주회사의 자회사 및 순자산부지분을 요건을 상장의 경우 30%에서 20%로 낮췄고 비상장의 경우에는 50%에서 40%로 완화했다.

제정안은 또 지주회사의 자회사 및 순자산부지분을 요건을 상장의 경우 30%에서 20%로 낮췄고 비상장의 경우에는 50%에서 40%로 완화했다.

제정안은 또 지주회사의 자회사 및 순자산부지분을 요건을 상장의 경우 30%에서 20%로 낮췄고 비상장의 경우에는 50%에서 40%로 완화했다.

제정안은 또 지주회사의 자회사 및 순자산부지분을 요건을 상장의 경우 30%에서 20%로 낮췄고 비상장의 경우에는 50%에서 40%로 완화했다.

제정안은 또 지주회사의 자회사 및 순자산부지분을 요건을 상장의 경우 30%에서 20%로 낮췄고 비상장의 경우에는 50%에서 40%로 완화했다.

제정안은 또 지주회사의 자회사 및 순자산부지분을 요건을 상장의 경우 30%에서 20%로 낮췄고 비상장의 경우에는 50%에서 40%로 완화했다.

제정안은 또 지주회사의 자회사 및 순자산부지분을 요건을 상장의 경우 30%에서 20%로 낮췄고 비상장의 경우에는 50%에서 40%로 완화했다.

제정안은 또 지주회사의 자회사 및 순자산부지분을 요건을 상장의 경우 30%에서 20%로 낮췄고 비상장의 경우에는 50%에서 40%로 완화했다.

제정안은 또 지주회사의 자회사 및 순자산부지분을 요건을 상장의 경우 30%에서 20%로 낮췄고 비상장의 경우에는 50%에서 40%로 완화했다.

제정안은 또 지주회사의 자회사 및 순자산부지분을 요건을 상장의 경우 30%에서 20%로 낮췄고 비상장의 경우에는 50%에서 40%로 완화했다.

제정안은 또 지주회사의 자회사 및 순자산부지분을 요건을 상장의 경우 30%에서 20%로 낮췄고 비상장의 경우에는 50%에서 40%로 완화했다.

제정안은 또 지주회사의 자회사 및 순자산부지분을 요건을 상장의 경우 30%에서 20%로 낮췄고 비상장의 경우에는 50%에서 40%로 완화했다.

제정안은 또 지주회사의 자회사 및 순자산부지분을 요건을 상장의 경우 30%에서 20%로 낮췄고 비상장의 경우에는 50%에서 40%로 완화했다.

제정안은 또 지주회사의 자회사 및 순자산부지분을 요건을 상장의 경우 30%에서 20%로 낮췄고 비상장의 경우에는 50%에서 40%로 완화했다.

제정안은 또 지주회사의 자회사 및 순자산부지분을 요건을 상장의 경우 30%에서 20%로 낮췄고 비상장의 경우에는 50%에서 40%로 완화했다.

제정안은 또